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실질적 소득지원을 위해
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지
원 근거를 신설하고, 특별지원사업비를 ‘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’와
‘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’로 구분하고, 지역주민 소득증대
재생에너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규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제6호가목”을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제7호가목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별표 제3호”를 “별표 1 제3호”로 한다.

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특별지원사업비는”을 “특별지원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제외한”으로, “정도”를 “정도,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”으로 한다.

④ 특별지원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비”라 한다)

나.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「신에너지 및

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 되는 비용(이하 “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”라 한다) 으로 구분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1)부터 4)까지를 각각 2)부터 5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 1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나목1) 중 “시설”을 “시설(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 중 “상수원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” 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·이용·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 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

가.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

나.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지역주민 소득증 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·이용·보급하는 사업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)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 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.	제4조(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) ① ----- ----- -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 제7호가목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계구간별 목표수질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·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.	제10조(수계구간별 목표수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별표 1 <u>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2조(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특별지원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 가.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

④ <u>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,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,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 금액을 결정·배분한다.</u> ⑤ (생략)	<u>는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”라 한다)</u> <u>나.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(이하 “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”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</u> ⑤ <u>특별지원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사업비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비를 제외한 -----</u> <u>-----</u> <u>정도,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13